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취급행태와 개선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s for Forfaiting in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김 창 선** Chang-Sun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포페이팅 취급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
| II. 포페이팅에 관한 개괄적 고찰 | V. 결 론 |
| III.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취급행태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에게 수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 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2011년도 이후 한국채택 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기존의 일반 네고를 단순 차입금으로 계상하게 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높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수출기업들이 차입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장부제거(book-off)가 가능한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의 포페이팅통일규칙 제정시행과 함께 수출기업들의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 증대에 발맞춰, 국내 각 외국환은행들도 포페이팅 관련 상품의 개발로 취급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포페이팅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주제어〉 포페이팅, 상환청구불능조건, 제한적 상환청구, 카운터포페이팅, 포페이팅통일규칙, 팩토링, 단기수출보험.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eokyeong University in 2015.

**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교수,

I. 서론

금융기관이 수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¹⁾으로 매도자인 수출기업에게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기법이 포페이팅(forfaiting)이다.²⁾ 포페이팅은 비교적 새로운 무역금융방식으로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곡물거래에서 시작되어 자본재로 발전되었으며(Ian Guild·Rhodri Haris(1985, 12); 김창선(2014, 48), 스위스 및 서독 등의 지역에서 생성 발전해온 어음할인식 중기신용 수출금융이다.(한국외환은행(1979, 3). 팩토링이 90~180일 기간의 일종의 소비재신용 수출금융인 데 반해(Ian Guild·Rhodri Haris(1985, 19), 포페이팅은 만기가 통산 5년(긴 것은 7년도 있음)이내인 중기 자본재신용 수출금융이었으나(한국외환은행(1979, 5), 최근에 와서는 단기 수출채권에 대해서도 취급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한국 실정에 맞게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으로 수정 채택되어,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기에,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상환청구가능조건으로 매각하는 행위 즉, 네고(negotiation)를 할 경우에는 우발채무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단순 차입금으로 계상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가 매각액만큼 증가하게 되어 있어,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수출기업의 재무구조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³⁾

수출기업들의 차입금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포페이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포페이팅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Forfaiting ; 이하 'URF800'이라 한다)⁴⁾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2013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단순 차입금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하게 되었고, 상환청구불능조건의 수출금융기법인 포페이팅을 네고의 대안으로 활용하면 수출대금 회수위험을 피할 수 있고,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에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 '상환청구불능조건' 외에도 '비소구조건', '상환불능조건', '무소구조건', '비상환조건' 등 은행의 거래약정서마다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포페이팅 통일규칙 공식변역 및 실무가이드'에 있는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Forfaiting은 우리나라에 '수출채권 포괄매입', '연지급 어음할인' 등으로 초기에 번역 소개된 바 있으나, Forfaiting 시장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여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3) 김정애, 최종서는 'K-IFRS 도입 이후 매출채권 양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례연구'(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2014.4월 p.318)에서, K-IFRS 적용 이후 매출채권양도에 대한 회계규정의 변화가 수출기업의 자산, 부채의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기업의 재무비율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포페이팅통일규칙(URF800)은 2012.11월 멕시코 ICC 은행위원회에서 96퍼센트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IFRS 도입으로 수출기업의 상환청구불능조건 환어음 매입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도 포페이팅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자 함이 본고의 취지이다.

과거 연구는 포페이팅 제도, 이론적 접근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국내 포페이팅 시장 실태를 처음으로 현상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금융기관 선정은 전국은행연합회 사원은행 전체 17개 은행으로, 가입된 순서에 의해 시중은행,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으로 구분하였으며, 시중은행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의 6개 은행과, 특수은행은 산업은행, 농협,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 6개의 지방은행은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을 대상으로 하였다. 준사원은행인 외국계 은행은 40개 은행이나 4~5개 은행을 참조하였다.⁵⁾

조사방법은 정부 신문고 또는 각 은행의 전자민원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설문에 대한 공문형식에 의한 답변을 받고,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통하여 자료의 충실도를 높였다. 특히 신문고 활용방법은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민원처리가 진행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식적인 회신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서의 답변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포페이팅 관련 규정과 거래약정서 등을 구하여 이를 함께 검토하였다.

II. 포페이팅에 관한 개괄적 고찰

1. 포페이팅의 개념 및 취급형태

포페이팅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금전채권인 지급청구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하며,⁶⁾ 수출기업으로부터 은행이 매입하는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1차 포페이팅이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의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포페이팅은 무역관련 매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할인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과

5)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조(2016.12.20. 방문)

6) URF800 제2조

거 20년 동안의 전통적인 개념이며, 현대의 포페이팅은 이제 종래에 비하여 더욱 많은 지급수단(instruments)과 구조 및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⁷⁾ 국제무역에서 금융조달을 위한 다목적의 유연한 도구로서 금융기관과 무역업체 모두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

2. 매출채권의 포페이팅 거래형태

1) 거래단계별 구분

포페이팅시장은 수출자나,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자로부터 유래되는 포페이팅 거래의 1차시장(primary market), 그리고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 사이에서 그 거래가 다시 이루어지는 2차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분되며,⁸⁾ 1차 시장은 최초 수출채권을 보유한 원매도인과 금융기관인 포페이터 사이에 일어나며, 포페이터가 다시 2차 포페이터(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 2차 시장⁹⁾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이 매수자인 은행(포페이터)에게 수출채권을 양도하는 1차 시장내에서 국내 외국환은행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한 포페이팅을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처리해주는 포페이팅을 '카운터포페이팅(counter-forfaiting)'¹⁰⁾이라 부르고 있다.

2) 거래조건별 구분

국내에서의 포페이팅업무는 2001년 한국수출입은행이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이재민·배인성(2015, 113). 1차 시장 즉, 수출기업과 포페이터인 은행간에 수출채권을 포페이팅하는 단계로 보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상환청구가능조건(with recourse),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 혹은 제한적 상환청구가능조건(limited recourse)¹¹⁾의 세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수출환어음을 추심하여 인수통지서를 접수한 이후에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하는

7) Donald R. Smith(2012), Introduction of URF 800.

8) URF800 제5조 및 제8조

9) 한국외환은행이 1998년 3월 기한부수출환어음 매입채권 약3천8백만불을 Standard Bank London Ltd. 앞으로 포페이팅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2차시장의 최초라고 본다(한국외환은행 1998.5.11. 공문)

10) KEB하나은행,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카운터포페이팅거래용) 및 기업은행,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카운터포페이팅 거래용) 참조

11) SMBC Account Receivables Purchase Agreement 제3조에는 Limited Recourse(제한적 소구)로 표기하고 있고, HSBC 'Master Agreement for Export Receivable Finance' 제3조에는 Repurchase(환매)로 되어 있다.

‘인수후 상환청구불능 네고거래’¹²⁾가 있으며, 상환청구가능조건으로 매입 후 인수통지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전환하는 ‘상환청구가능조건 매입 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전환하는 거래’가 있으며¹³⁾, 추심처리하여 인수통지서 접수 후 상환청구불능조건 전환하되 추심 이후 인수통지서 접수 이전의 기간 중에 수출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환청구가능조건 매입처리하는 ‘중간형의 상환청구불능조건 거래’¹⁴⁾가 있다.

또한, 상환청구불능조건 포페이팅을 취급하는 국내 거의 모든 외국환은행에서는 수출기업과 체결하는 포페이팅 약정 시에 허위 진술, 허위 서류, 인수거절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출기업에게 상환청구가능의무를 부담시켜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약정하고 있는 데 이를 ‘제한적 상환청구가능조건’이라 할 수 있다.¹⁵⁾

은행법이나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등 국내 법규상 은행이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에 관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매입 시 상환청구가능조건, 상환청구불능조건 또는 제한적 상환청구가능조건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하면 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적법한 합의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약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실무적으로는 무조건적 상환청구불능 조건의 매입은 잘 통용되지 않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상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3) 포페이팅 취급대상에 따른 구분

포페이팅 대상의 지급청구권으로는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장대금채권, D/A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어음채권, 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 등이 있으며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대한상공회의소(2013, 7)).

- ① 신용장을 이용한 포페이팅 : 기한부 신용장에 기초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다. 일람불 신용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개설은행으로부터

12) 한국외환은행이 2003년 7월 28일 ‘포페이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국내 시중은행으로서 처음 시행하였다.

13) 한국외환은행이 상기 지침을 2005년 8월 8일 개정하면서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14) KEB하나은행에서는 이를 ‘Hybrid Forfaiting’이라고 부름

15) 신한은행,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 제6조(소구의무가 있는 경우), KEB하나은행,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포페이팅거래) 제3조(상환의무) 등 대부분의 은행의 추가약정서에 제한적 상환청구가능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 통보를 받은 후에 금융을 제공하는 ‘인수 후 포페이팅’이 주로 이루어지나, 개설은행의 인수 확정 전에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하는 ‘인수전 포페이팅’ 거래를 할 수도 있다.

- ② D/A를 이용한 포페이팅 : D/A거래에서 수입기업에 대한 어음채권이 지급청구권으로 매매되며, 수입기업인 환어음의 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하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전환하게 된다.
- ③ 수출신용기관이 발행한 보험 등을 이용한 포페이팅 :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 ECA)이 취급하는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포페이팅을 말한다.
- ④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을 이용한 포페이팅 : 사후송금 또는 D/A거래에서 포페이팅은 보증신용장(standby L/C) 또는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이라는 신용보강수단을 활용하는 포페이팅을 말한다.
- ⑤ BPO를 이용한 포페이팅 : BPO(Bank Payment Obligation)는 사후송금 거래에서 수입기업의 거래은행이 수출기업의 거래은행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지급확약이며, 신용장과 같이 신용보강의 수단이 된다.
- ⑥ 어음보증을 이용한 포페이팅 : 어음보증(avalization 또는 Aval)은 어음 지급인 이외의 당사자가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상의 보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보강수단이 된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상품 소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포페이팅을 취급함에 있어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¹⁶⁾ 인수통지서 접수후 비소구조건으로 취급하는 신용장 중심의 포페이팅 보험상품 이외에도, 신용장 이외에 포페이팅의 활성화가 시급한 D/A나 O/A에 대해서도 연계보험이 될 수 있는 일반수출거래 보험과 수출채권유동화 보험도 운용되고 있다.

16)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무역지원사업’ 참조, 2017.2.20.일 방문

1)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상환청구가능조건으로 신용장을 매입한 후 매입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개발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을 포페이팅에 확대하여 적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은행이 되며, 신용장개설은행의 인수 후 취급하므로 인수거절의 위험은 없다. 만기에 미결제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게 되며, 보상비율은 95%이며, 중견기업은 97.5%, 중소기업은 100% 차등 지급된다.

2)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은행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는 금융기관이 되며, 결제기간은 180일 이내(신용장의 경우 360일)로 운용되고 있으며, 보상비율은 100% 범위 내이다.

3)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¹⁷⁾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보험금 청구권 및 수취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¹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관련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17) 최근에는 국내 외국계 은행에서는 단기수출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도하여 담보제공을 위한 합의를 통한 95% 보험 커버되는 거래까지도 취급하는 등 국내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성을 띄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Account Receivable Purchase Agreement 참조)

18)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청구권 및 수취권 양수도를 위한 약정서' 참조

〈표 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상품

단기수출보험 상품	대상 거래	계약자	보상	활용
선적후-일반 수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내 • 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 • 신용장, 무신용장 모두 	수출자	95%	청구권 양수도
포페이팅 (비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내 • 신용장 인수통지서 접수 후 비소구 매입 • 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 	은행	95% (중소기업 100%)	은행의 신용 한도
수출채권유동화 (비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일 이내(신용장은 360일) • 일반수출, 위탁가공 	은행	100%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수집 재작성

4. 수출입은행의 Counter-Forfaiting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 상환청구불능으로 전환하여 수출입은행이 해당 매입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지급하고, 향후 환어음 만기일에 개설은행이 결제하는 신용장 대금을 수출입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의 수출신용장 매입거래를 카운터포페이팅(Counter-Forfaiting)이라 한다. 2016년말 현재 수출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신한, 국민, KEB하나, 농협, 대구, 경남, 수협,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이며,¹⁹⁾ 1차 매입은행과 해외의 또 다른 매수자가 아닌 국내에서의 2차 포페이팅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의 신용위험을 수출입은행에 전가할 수 있고,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수출보험을 부보할 필요도 없고, 외국환은행의 신용위험 감소에 따른 포페이팅의 적극적인 취급으로 차입금으로 인식되는 매입외환계정을 제거(book-off)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9) 한국수출입은행 설문서 응답 2017.1.25.일 참조

Ⅲ.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취급행태

1. 대상거래

국내 외국환은행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포페이팅 대상거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국내 외국환은행별 포페이팅 취급상품

은행별	신용장		추심		비고	
	sight	usance	D/P	D/A		
시중 은행 (6)	신한	×	2년 이내	×	180일 이내	수출입은행 협약
	우리	×	30일~1년 이하	×	×	수출입은행 협약
	SC	×	180일 이내	×	×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으로 신용위험 커버
	하나	○	제한없음	×	○	수출입은행 협약
	국민	×	30일~1년 미만	×	×	수출입은행 협약
	시티	×	365일 이하	×	×	
특수 은행 (5)	산업	×	30일~1년 이내	×	×	
	농협	×	30일~1년 이내	×	×	수출입은행 협약
	기업	×	30일~1년 이내	×	×	수출입은행 협약
	수출입	×	30일~2년 미만	×	지급보증	
	수협	×	30일~1년 미만	×	×	수출입은행 협약
지방 은행 (6)	대구	×	30일~1년 미만	×	×	수출입은행 협약
	부산	×	30일~2년 미만	×	×	
	광주	×	x	×	×	
	제주	×	x	×	×	
	전북	×	x	×	×	
	경남	×	30일~1년 이하	×	×	수출입은행 협약

자료 : 각 은행 설문 응답자료에서 재편집

신용장에 있어서는, 하나은행이 sight 신용장을 포함하여 취급하고 있을 뿐이며, 국내 모든 외국환은행들이 usance신용장에 대해서 주로 취급하고 있고, 대상기간을 은행별로 약간 차이를 두고 있다. 공통적으로 발행은행의 인수통보(Acceptance Advice ; A/A)를

받은 이후에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전환하는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으며, 인수통보 접수 전까지는 상환청구가능조건부 매입(Negotiation)으로 취급하거나 추심(Collection)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banker's Usance 신용장은 수출상 입장에서는 sight신용장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취급하지 않고, 포페이팅 취급대상으로는 shipper's Usance 신용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 1년 이하 어음기간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신한, 하나, 수출입, 부산은행 등 4개 은행만이 2년까지 확대 취급하고 있다.

SC은행의 경우에는 포페이팅을 대표적인 상품으로, 180일 이내의 1백만불 이하의 신용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포페이팅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반 네고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180일 이내의 3천만불 이하의 경우에 취급하고 있다.²⁰⁾ 시티은행의 경우 1년 이하의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다.

추심의 경우에는 D/P에 대해서는 국내 어느 은행에서도 취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D/A의 경우에만 취급하는 은행이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수출입은행 3개 은행 뿐이다. 이들 3개 은행은 D/A거래 추가약정서²¹⁾ 등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나, 실제 취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급보증을 받은 D/A의 경우에 취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D/A거래 관행상 지급보증 행위는 거의 일어남이 없이 거래되고 있으며, 지급보증 행위가 보충될 경우에는 신용장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특수은행에서는 농협, 기업은행, 수협, 지방은행에서는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은 자체적으로 직접 취급하기 보다는 수출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포페이팅 취급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입과 동시에 포페이팅 위험을 수출입은행에 전가하게 된다.

수출입은행이 2년 미만의 기한부신용장을 포페이팅 대상거래로 운용함에도 이들 의뢰 은행들은 신한과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1년 이내의 기한부신용장에 대해서만 취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은행 중 광주은행, 제주은행과 전북은행은 포페이팅을 아예 취급하고 있지 않다.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포페이팅은 화환신용장 외에도, 약속어음, 환어음, 보증신용장, 지급보증 등으로 그 지원대상이 유통가능성, 무조건적, 자유양도 가능한 보증장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aval일 경우에는 거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박세훈(2007, 85), 국내에서는 기한부신용장 중심의 포페이팅이 취급되고 있다.

20) SC은행, '매출채권 약정서' 제1조, 2016.2. 개정

21) 신한, 하나, 수출입은행에서는 각각 D/A용 포페이팅약정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 대상금액

기한부신용장에 대한 포페이팅 취급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별다른 제한은 없이 운용하고 있으나, SC은행에서는 1백만불 이하로, 국민은행에서는 2천만불 이하로 운용하고 있다.

시티은행의 경우, 취급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으나, 신용장 개설은행 및 개설은행 소재국별 limit을 사전에 정해놓고 있고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최저 매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D/A거래에 대해서는 신한, 하나은행이 금액에 대한 제한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별도 약정서를 운용하고 있으나, 취급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수은행은 수출입은행에서 1만불 이상 5천만불 이하로 운용하고 있어, 농협, 기업과 수협은 수출입은행과 카운터 포페이팅을 하고 있기에 취급대상 금액은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다. D/A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곤 포페이팅 취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입은행도 지급보증된 D/A어음만을 취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은행에서는 수출입은행과 카운터 포페이팅을 취급하는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에서는 각각 2천만불과 5천만불 이하의 거래에 대해 취급하고 있으며, 재매각이 없는 부산은행에서는 5백만불 이하에 대해 포페이팅 취급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모두 D/A 포페이팅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표 3〉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취급대상 금액

은행별		기한부신용장	D/A
시중은행 (6)	신한, 하나, 우리, 시티	제한없음	별도 약정
	SC	1백만불 이하	×
	국민	1만불 이상 2천만불 이하	×
	특수은행 (5)	산업	10만불 이상
지방은행 (6)	농협, 기업, 수협	1만불 이상 5천만불 이하	×
	수출입	1만불 이상 5천만불 이하	지급보증
	대구	1만불 이상 2천만불 이하	×
	부산	1만불 이상 5백만불 이하	×
	광주, 전북, 제주	불취급	×
	경남	1만불 이상 5천만불 이하	×

자료 : 각 은행 설문 응답자료에서 재편집

3. 거래방식

국내 모든 외국환은행이 기한부 신용장거래의 경우 발행은행의 인수통보 전 상환청구불능조건 포페이팅 취급은 전혀 없고, 인수통보 후 상환청구불능조건 매입이거나, 인수통보 전 상환청구가능조건 매입(일반 네고)을 하고, 인수통보 접수이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전환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만이 일람불 신용장도 취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채권을 먼저 추심하여 인수통보 이후 상환청구불능조건 전환하되, 인수통보 전에는 수출기업이 요청할 경우 상환청구가능조건 매입을 할 수 있는 변형된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다.²²⁾

4. 취급규모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무역금융기법인 포페이팅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현재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²³⁾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2011.6.21 일 수출입은행 보도자료에서 1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였다.²⁴⁾ 그러나 K-IFRS 도입한 2011년 이후는 아직까지 추정된 바가 없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0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는 약 3배 정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²⁵⁾

22) KEB하나은행에서는 이를 “하이브리드 포페이팅(Hybrid Forfaiting)”이라 부른다.

23) URF800 Forewords

24)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보도자료. 100억 달러로 추정된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나, 2012년도 발표한 URF800 최종안 서문에서 세계시장 규모를 3천억 달러로, 추정 당시(2010년도)의 세계 수출규모 15조 달러의 약 2%인 점을 한국 수출액 약 5천억 달러에 대비하여 추정한 것으로 필자가 추정함.

25) 한국수출입은행의 2005년 이후 포페이팅 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K-IFRS 적용 이전까지는 10억불 미만이다가, 2011년 적용 이후 3배수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감소추세이다.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적	(억원)	4,875	8,444	7,551	10,738	10,353	17,945
	(억불)	4.8	9.1	8.1	8.5	8.9	15.8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적	(억원)	29,943	48,540	39,589	36,719	31,629	33,927
	(억불)	26.0	45.3	37.5	33.4	27.0	28.1

*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p.736), 이재민 전계서(p.115) 및 설문서를 종합하여 재작성(해당연도말 미달러 매매기준율로 환산)

〈표 4〉 한국수출입은행의 포페이팅 지원실적 및 건수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적	(억불)	15.8	26.0	45.3	37.5	33.4	27.0	28.1
	(건수)	801	701	1,331	1,181	1,346	1,267	1,085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설문 응답자료에서 재편집

국내 대부분의 수출금융은 상환청구가능조건의 네고거래가 대부분이어서 포페이팅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이는 아직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담보를 위주로 한 상환청구가능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 즉,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시티은행의 경우, 신용장거래의 경우 거의 50% 수준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한국계 은행들보다 조달금리가 낮아 금리경쟁력을 무기로 대기업 위주의 영업을 하는 관계로, 상환청구불능조건 취급을 위주로 하고 있다. HSBC가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고, 여타 외국계 은행들이 금리경쟁력을 내세워 국내 대부분의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어²⁷⁾ 이를 수출입은행의 증가율과 K-IFRS 적용시점을 감안하여 추정하여 볼 때 국내 시장규모는 약 300억불 정도로 추정된다고 본다.

IV. 포페이팅 취급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문제점

1) 취급실적의 미미 및 높은 조달금리

전 세계 포페이팅 시장규모는 약 3천억 달러 이상²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국계 금융기관들의 취급실적은 미미하여 그 거래규모가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수출환어음 매입(Nego)제도를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취급하고

26) 설문의 취급실적 답변에 거의 거절하고 있고, 전화통화상 확인으로는 0.1%내외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은행의 설문 결과, 전체 수출환어음 매입액의 약 1% 수준이라고 하였다.

27) HSBC의 포페이팅 취급실적은 2005년 50억불, 2006년도 55억불, 2007년도 60억불로 파악된다.(박세훈·정영동·김중년(2009), “포페이팅 거래시 채무증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p.275) ; Mizuho은행의 취급실적은 2013년 21억불이며, 연간 25억불 정도이다.(유현진(2014), “국제포페이팅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28) Jean Guy Carrier, Forewords of URF800

있으며, 비슷한 환가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외국계 은행들은 대부분 직매입(일반 네고)을 하지 않고 재매입(renego)만 취급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용장 중심의 포페이팅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결제방식 중 신용장 이용비율은 날로 감소하고 있다. 무신용장 방식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²⁹⁾ 국내 은행들은 취급할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제방식 중 기한부신용장과 D/A의 결제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20% 이하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송금방식이 70%대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라 취급대상 수출채권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5〉 연도별 포페이팅 취급대상 수출실적

(단위 : 억불)

포페이팅대상	2012	2013	2014	2015	2016
usance L/C	220	219	221	158	156
D/A	444	455	477	449	417
사후송금	1,475	1,440	1,383	1,311	1,186
합 계	2,139	2,114	2,081	1,918	1,761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조회'에서 편집 작성

또한 국내 외국계 은행의 자체 자금조달금리가 국내 외국환은행보다 낮아, 국내 은행들의 네고 환가요율보다 월등히 낮은 요율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경쟁력 면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나마 대부분 외국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³⁰⁾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포페이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가요율을 외국계 은행 수준

29) 최근 수출 결제방식별 연도별 거래비중은 아래와 같다. (억불)

결제방식별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 계	5,479	100	5,596	100	5,727	100	5,268	100	4,954	100	
송금	사전송금	2,739	50	2,935	52	3,108	54	2,922	55	2,832	57
	사후송금	1,475	27	1,440	26	1,383	25	1,311	25	1,186	25
추심	D/P	70	1	64	1	62	1	56	1	51	1
	D/A	444	8	455	8	477	8	449	9	417	8
L/C	sight	531	10	483	9	476	8	372	7	312	6
	usance	220	4	219	4	221	4	158	3	156	3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조회'에서 편집 작성, 2017.2.19. 방문)

30) 국내에서 위안화 거래에 가장 적극적인 은행은 HSBC은행이다. 역외 시장을 통해 위안화 조달 비용이 중국 현지보다 4%포인트 낮고, 홍콩에서도 다른 글로벌 은행보다 70~80bp 낮게 조달하는 등 금리 경쟁력을 내세워 활발하게 하고 있다. HSBC은행은 대우인터내셔널과 위안화 표시 수출채권을 포페이팅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월 매달 1억 달러 이상씩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1.8.31.)

으로 낮추어야 하나, 이는 현행 네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으로는 현행 대부분의 일반 네고 제도가 포페이팅 거래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이는 은행의 입장에선 리스크는 더 크게 부담하면서 낮은 환가료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은행으로서는 유리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포페이팅 제도를 도입했다더라도 실적이 미미한 이유라고 본다.

2) 상품의 다양성 미흡 및 안정성 위주 영업

국내 외국환은행 대부분은 신용장 위주의 2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포페이팅 금융제공 기간이 짧고 제공금액도 제한되어 있다. D/A 등의 수출채권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뿐이며, 거의 대부분의 은행은 기한부신용장에 한하여, 대상기간도 신한은행, 하나은행, 수출입은행과 부산은행의 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1년 이내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위험의 인수도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들이 발행은행의 인수 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발행은행의 파산 또는 도산 등의 신용위험만 인수할 뿐이며, 미결제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성 위주의 포페이팅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즉, 인수 후 상환청구불능조건 매입은 국내 외국환은행이 서류위험(documentary risk)마저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기의 포페이팅은 자본재 위주의 중기신용 수출금융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포페이팅은 1~2년 이내의 단기성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D/A거래나 O/A 거래보다는, 신용장발행은행의 대금지급이 확보된 신용장을 위주로 취급하고 있음은 지극히 보수적 운용인데다, 발행은행의 인수통보 접수 이후 상환청구불능조건 포페이팅 취급으로 대금결제가 확보된 안전위주의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는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³¹⁾

3) 외국환은행의 해외 신용평가 및 위험인수 부담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지금까지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상환청구가능조건 매입을 위주로, 안전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상환청구불능조건 매입에 따르는 해외 수입기업이나 신용장 발행은행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자생력이 약하다(오원석·안유신, 2013, 5).

31) 국내은행은 글로벌 선진은행에 비해 해외수익비중, 국제화수준이 모두 낮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국내은행의 초국적화지수는 2015년말 기준으로 6.9%로 나타나, 글로벌은행들 3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금융감독원 2016.5.27. 보도참고자료)

수출기업으로부터 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채권을 일반매입(네고)을 하였을 경우 우발채무³²⁾만을 부담하고 사실상 장부제거(book-off)를 해왔으나,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2011년도 이후부터는 장부제거가 불가능하고, 단순차입금으로 계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차입금을 감축하기 위해서 포페이팅을 취급하려 하는데,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신용장발행은행이 만기일에 대금결제를 약속한 행위 즉, 인수(acceptance)를 하여 확정채무³³⁾로 확정되고 그 통보를 접수한 이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용장 발행은행의 도산위험과 신용장발행은행 소재국의 국가위험 외에는 위험을 떠안는 것도 없는 것이다. 발행은행이 수출지 매입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 이후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서류에 대한 서류위험(document risk)마저 국내 외국환은행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이 있는데다, 인수통보 접수 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포페이팅 취급하므로 포페이팅인 국내 외국환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외국환은행의 여건하에서 D/A거래에서 수입지 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국내 외국환은행이 취급대상을 확대하는 일은 사실상 시기 상조라 할 수 있다.

2. 개선점

1) 취급상품의 다양성 확대 및 금리경쟁력 제고

신용장 포페이팅은 몇몇 지방은행을 제외하곤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D/A 포페이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의 부담으로 몇 은행만이 상품을 개발한 상황이다.³⁴⁾ 기업들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용장 뿐만 아니라, D/A 나아가서는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국내매출을 포함하여 취급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포페이팅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32) 우발채무(偶發債務, contingent liability)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 즉,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를 말하며 재무상태표의 각주사항으로 표시된다.

33) 신용장발행은행의 입장에서 신용장발행이후 인수 전까지는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인수행위를 하면 신용장발행은행의 우발채무는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34) 한국외환은행과 우리은행은 2012.2월 위안화 포페이팅을 처음 개발한 데 이어, D/A 포페이팅은 2011.5월 신한은행이 처음 개발한 데 이어 2012.9월 한국외환은행이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표 6〉 은행별 포페이팅 취급상품 비교

은행별		기한부신용장				일람불 신용장	D/A	O/A
		180일	1년	2년	제한없음			
시중 은행	SC	○						
	우리 국민 시티	○	○					
	신한	○	○	○			180일	
	하나	○	○	○	○	○	○	
특수 은행	산업 농협 기업 수협	○	○					
	수출입	○	○	○			○	
지방 은행	대구 경남	○	○					
	부산	○	○	○				
외 국 계	SMBC ³⁵⁾	○	○	○	○	○	180일	180일
	HSBC ³⁶⁾	○	○	○	○	○	○	○
	BTMU ³⁷⁾	○	○	○	○	○	○	○
	중국건설은행	○	○	○	○			

자료 : 각 은행 설문 응답자료에서 재편집

〈표 6〉에서 보면,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대부분의 국내 은행은 추심 후 발행은행의 인수통지서 접수 후부터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하고³⁸⁾, 인수통지서 접수이전까지는 상환청구가능조건으로 내고하고 있다.³⁹⁾ 취급대상 기간도 180일 이내의 환어음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있는 은행도 있고, 1년 이내의 기간만 취급하거나 2년 이내까지 취급하는 은행까지 있다. 그러나 KEB하나은행은 인수통지서 이전부터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할 수도 있으며, 환어음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D/A거래에 대해서는 신한, 하나 수출입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과거 신용장 위주의 결제방식에서 최근에는 무신용장 방식 특히 송금방식의 결제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신용장 위주의 포페이팅에서 탈피하여 무신용장 방식에까지 국내 은행들은 취급상품의 다양화를 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SMBC, HSBC, BTMU 등의 국내 외국계 은행의 경우, D/A 및 O/A거래에 대해서도 상

35) SMBC 'Account Receivable Purchase Agreement'

36) HSBC 'Master Agreement for Export Receivable Finance' 제2조 Assignment(양도)

37) BTMU '수출대금채권 매입에 관한 약정서(O/A거래용)'

38) 2003년 7월 당시 한국외환은행이 처음 취급함.

39) 과거 한국외환은행이 2005년 8월부터 이 방식으로 취급함

40) 신용장 거래비중은 과거 14%에서 9%로 감소하는 반면, 송금방식은 77%에서 82%로 대폭 증대되고 있다 (각주 29번 참조)

환청구불능조건의 수출금융을 취급하고 있다.⁴¹⁾ 다만 신용장에 비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이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계약에 매도인인 수출상이 가입하게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갖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인 은행이 양수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⁴²⁾ 여기에는 매도인-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3자간 보험금청구권의 양수도와 관련한 3자간 계약이 선행되어야 한다.⁴³⁾

2) 포페이팅 취급기반 확보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포페이팅 금융을 취급함에 있어서도 신용장발행은행의 지급확약서인 신용장을 매입하더라도 매입 즉시 상환청구불능조건 매입이 아니고, 신용장발행은행의 인수통보가 접수된 이후 서류상의 하자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즉, 신용장발행은행의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된 상태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신용장발행은행의 도산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국가 위험만을 부담한 채, 무위험의 안전한 포페이팅 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안전위주의 영업행태로 수출기업들에게 대부분의 위험을 전가시킬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수입기업의 국가 위험과 수입기업의 신용평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하며, 수출기업이나 포페이팅 금융기관들이 신뢰 속에 참고할 만한 신용정보자료를 축적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수출기업들에게 원활한 수출금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서류위험이라도 떠안을 수 있는, 포페이팅 취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부터 시작하여 포페이팅 약정서의 정비,⁴⁴⁾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능력을 축적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41) SMBC의 “외국환거래약정서(D/A거래용)” 제8조 및 “수출대금채권 매입에 관한 약정서(O/A거래용)” 제8조에는 ‘본 약정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본건 수출대금채권의 매입 이후 본거 수출보험 계약에서 부보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매도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다.

42) SMBC 상계 각 계약서 전문 참조

43) SMBC 상계 각 계약서 제2조

44) 국내 각 외국환은행이 운용하는 ‘포페이팅약정서’는 ‘포페이팅통일규칙(URF800)’이 시행되는 2013.1.1.일 이전부터 시행되어 준수문구 등 동 규칙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공적수출신용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추진 필요

국내 외국환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포페이팅 취급이 가능한 수출채권에 대해서는 수출기업과의 포페이팅약정에 의해 취급하고, 위험 부담으로 취급이 어려운 수출채권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⁴⁵⁾과 연계 추진하여 포페이팅업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또는 수출채권유동화)을 활용하여 상환청구불능조건 수출채권 매입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카운터포페이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국내 외국환은행의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수출기업들의 부채비율 감소와 수출금융지원을 도모하게 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부담하게 되는 국가위험, 신용위험 등을 인수하는 단기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이용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 외국환은행이 기한부 신용장에 있어서 신용장발행은행의 인수통보 후 포페이팅 취급에서 탈피하여 D/A거래나 더 나아가 O/A거래에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이 안게 되는 위험인수 부문을 공적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상품으로 상당부분 커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7〉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활용

결제 방법		활용 방법	은행-기업간 약정
신용장	포페이팅 가능	보험 비부보 또는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약관 체결	포페이팅 약정
	포페이팅 불가능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약관 체결	ARP 약정
D/A, O/A			

국내 외국계 은행의 포페이팅 거래에 있어서는, 국내은행보다는 훨씬 더 취급대상과 취급범위가 다양하다. 신용장거래는 물론이고, D/A 및 O/A거래에 대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유동화보험(EFF)을 통해 100% 보험 커버되는 상환청구불능조건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으며, 신용장 위주의 개념을 넘어선 포페이팅약정이 아닌, 매출채권 전반을 아우르는 매출채권매입약정(Accounts Receivable Purchase ; ARP)약정으로 확대운용

45)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 ECA)이란 수출 및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국, 수입자 또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제도와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의 적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된다.

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카운터포페이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⁴⁶⁾ 수출입은행이 해당 매입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지급하고, 향후 환어음 만기일에 개설은행이 결제하는 신용장 대금을 수출입은행 계좌에 상환하는 방식인 카운터포페이팅은 기존의 일반 매입보다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 양쪽 다 좋은 방식이다. 기업으로서는 인수 이후 Book-Off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의 기회가 되며, 외국환은행에서도 개설은행 및 수입국가 신용리스크를 전가하여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V. 결론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는 포페이팅 거래는 국내 일부 외국환은행이 1차 포페이팅 매입하여 수출입은행에 재매각하는 카운터포페이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성되는 2차시장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거래조건별로는 신용장발행은행의 인수통보 접수 전까지 소구조건으로 매입하였다가 접수 이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전환하는 포페이팅과, 인수통지서 접수 이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는 포페이팅이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외국환은행들은 어느 경우이든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구권을 발동하여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상환청구가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포페이팅 대상 상품으로는 기한부신용장을 중심으로 인수통지서 접수 이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상기간에 있어서는 2년 이내까지 취급하는 몇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1년 이내를 취급대상으로 하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다. 극히 일부 은행이 일람불 신용장과 D/A어음까지 확대운용하고 있으나 취급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상품을 연계하여 취급하는 정도이다.

포페이팅 대상 금액에 있어서도 제한없이 취급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5천만불 이하, 2천만불 이하, 5백만불 이하 및 1백만불 이하 등 다양하게 은행별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달리하고 있다. 취급규모면에서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46) 현재 한국수출입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 은행은 신한, 국민(2011.6월), KEB하나(2012.10월), 농협(2013.6월), 대구(2013.11월), 경남(2014.1월), 수협, 우리, 기업은행(2016.7월) 등 9개 은행이다.

있으며, 국내 외국계 은행이 국내 포페이팅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국내 포페이팅 시장 규모는 약300억불로 추정되나 전체 수출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다.

또한 포페이팅 취급 대상도 1~2년 이내의 기한부신용장으로서 신용장발행은행의 인수 통보 후 취급하는 안전 위주의 소극적 영업이 대부분이며, D/A거래에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페이팅 취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취급대상을 확대하고 금리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취급기반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약정서의 정비도 필요하며, 특히 활성화 초기단계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이 더욱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포페이팅 규모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으나, 과거 추정치에 수출입은행의 증가율과 국내 외국계 은행의 취급실적들을 추계하여 약 300억 시장으로 추정하였을 뿐이다. 둘째, 수출기업 입장에서 국내 외국계 은행을 전수 조사하여 외국환은행과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였으나,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상품 개발 및 운용실태 파악에 만족해야 했으며 이 분야의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 위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은행업계와 수출기업에게 포페이팅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창선(2014), “알기쉬운 국제결제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한국금융연수원(2013), “포페이팅통일규칙 URF800 공식변역
및 실무가이드”.
- 이재민·배인성(2015), “글로벌 무역금융”, 서울: 도서출판 두남.
한국외환은행 조사부(1979), “Forfaiting 금융”.
- 김정애·최종서(2014), “K-IFRS 도입 이후 매출채권 양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례연
구”,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pp.317~343.
- 박세훈(2007), “수출대금결제에서 신용위험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세훈·정영동·김중년(2009), “포페이팅 거래시 채무증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pp.271~293
- 오원석·이운창·김필준(2013), “우리나라의 포페이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
역보험연구」, 제14권 제4호, pp.255~278.
- 오원석·안유신(2013), “무역보험을 활용한 수출채권 매각시장 활성화방안”, 「무역보험연
구」, 제14권 제1호, pp.1~21.
- 유현진(2014), “국제 포페이팅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Ian Guild·Rhodri Haris(1985), “Forfaiting”, Cambridge : Woodhead-Faulkner Ltd.,
전국은행연합회(2016.12.20), <http://www.kfb.or.kr/cms.html?S=AC>
- 한국무역보험공사(2017.2.20) https://www.ksure.or.kr/insur/sei_popeyiting01.do
- 한국수출입은행(2017.1.25),
<https://www.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76&menuid=001005005001&pagesize=10&boardtypeid=36&boardid=49917>
-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7.2.19),
<http://www.trass.or.kr/service/statistic/StatisticsViewServlet?mainServiceURL=P02M01D020>

A Study on the Practices for Forfaiting in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Chang-Sun Kim

• Abstract •

Forfaiting is a trade finance facility whereby financial institution purchases accounts receivable from exporters, on a without recourse basi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in 2011, accounting for simple borrowing as usual negotiation increases debt ratio which in turn, worsens financial soundness of a company. Hence, exporting companies have their interest in forfaiting that enables book-off in order to decrease the borrowing.

Along with the execution of URF 800 at ICC and increasing the interest of exporting companies into forfaiting, foreign exchange banks in Korea expand the development of products related to forfaiting. Upon surveying all these national banks of this matter, this paper identified an appropriate solution for the forfaiting practice.

<Key Words> Forfaiting, Without Recourse, Limited Recourse, Counter-forfaiting, URF800, Factoring, Short-term Export Insurance